

2021년도 안전보건공단 경력직 채용 공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예방의 사명을 수행할 역량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1년 11월 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I 채용 개요

1. 채용분야 및 인원

(단위: 명)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 수행업무
4급	건축시공	7명	건축구조물 시공현장 중대재해조사, 재해예방 기술지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등
	토목시공	6명	토목구조물 시공현장 중대재해조사, 재해예방 기술지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등

- ※ 본 채용은 전국단위 채용으로 공단 내부수요, 합격자의 합격순위·희망근무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부서에 배치될 예정임
- ※ 인사발령은 합격자 등록자에 대해 별도 알림예정이며 발령지 변경은 불가능함 (발령지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

2. 지원자격, 우대사항 및 근무조건

□ 공통 지원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에 맞춰 전직장 퇴사완료 및 발령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채용분야별 지원자격(아래의 응시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만 지원가능)

【건축시공】

학위	○ 관련전공* 학사 학위 이상 * 관련전공: 건설, 건축, 시공, 안전 ☞ 학과명(전공명)에 상기 단어가 포함되는 학과(전공) 및 이에 준하는 학과(전공)
자격	○ 자격증 또는 면허증 무관
경력	○ 관련분야* 경력 4년 또는 1,460일 이상 * 관련분야: 건설, 건축, 시공, 안전 ☞ 경력(재직)증명서의 부서명 또는 담당업무에 상기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 관련 분야 경력으로 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상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경력이 4년 또는 1,460일 이상인 경우에도 관련분야 경력 인정 ↳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야별 참여 기간 인정일 및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학력 등」 증명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하여야 함
핵심직무	○ 건축구조물 시공현장 중대재해조사, 재해예방 기술지원,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등

【토목시공】

학위	○ 관련전공* 학사 학위 이상 * 관련전공: 건설, 토목, 시공, 안전, 사회기반, 인프라, 사회환경, 지질 ☞ 학과명(전공명)에 상기 단어가 포함되는 학과(전공) 및 이에 준하는 학과(전공)
자격	○ 자격증 또는 면허증 무관
경력	○ 관련분야* 경력 4년 또는 1,460일 이상 * 관련분야: 건설, 토목, 시공, 안전, 사회기반, 인프라, 사회환경, 지질 ☞ 경력(재직)증명서의 부서명 또는 담당업무에 상기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 관련 분야 경력으로 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상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경력이 4년 또는 1,460일 이상인 경우에도 관련분야 경력 인정 ↳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야별 참여 기간 인정일 및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학력 등」 증명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하여야 함
핵심직무	○ 토목구조물(흙막이·터널·교량 등) 시공현장 중대재해조사, 재해예방 기술 지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등

□ 우대사항(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취득 또는 해당여부 판단)

- 서류·면접 각 전형별로 동일전형에서 가산점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구분	적용대상 및 우대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접수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유지자에 한함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동점자 발생 시에만 우선순위 부여 ☞ 서류·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접수마감일 기준 장애인 등록 유지자에 한함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자로서 본인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접수마감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접수마감일 기준,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우대자격증 소지자	○ 해당 채용분야 직무설명서상 우대자격증 소지자 * 세부종목 직무설명서 참조 ☞ 서류전형 만점의 1·3·5%

□ 근무조건

○ 신분: 정규직

- ※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수습기간 동안 처우는 정규직과 동일)

○ 보수: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 호봉은 최종 합격 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별도로 산정예정

○ 근무장소: 전국 부서

- ※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전국 순환근무 실시

❖ 경력인정 관련 유의사항

- 경력(재직)증명서 상 경력은 지원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 소속 부서, 담당업무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출신기관의 직인 필수)
 - * 출신기관의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에 담당업무란이 없는 경우, 출신기관의 인사담당자가 해당경력을 수기로 작성 후 제출가능(인사담당자의 성명, 서명, 직장전화번호 기재필수)
 - * 출신기관의 증명서 양식에 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덧붙임1]의 양식으로 제출가능
- 2개 이상의 경력기간을 합산함에 따라 1개월 미만 일수가 발생할 경우, 전체경력을 일수로 계산하여 1,460일 충족여부를 판단함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 특히, 입사지원서 경력사항란에 담당업무를 입력한 경우 증명서에도 해당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증빙하지 못하는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기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력증명서 발급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폐업* 등 개별적인 사정으로 경력증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경력을 불인정함
 -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발급)'에 의한 경력증빙은 인정하지 않음
- 지원서 작성 당시 재직 중인 경우, 경력기간은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일자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대 접수마감일까지 인정
- 경력요건 충족여부 판단을 위한 경력기간은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기간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와 중복되는 기간만으로 산정함
 - ※ 경력(재직)증명서에 존재하는 경력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더라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요건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경력기간 계산 시 산입하지 않음

II 채용전형 절차 및 일정

※ 일정 및 장소는 코로나19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전형	원서접수	서류심사 (3배수 선발)	인성검사 (미완료 시 면접참가 제한)	면접심사 (1배수 선발)	합격자 등록	임용
일정	11.2~11.17.	11월말	11.30.~12.3.	12.7.	12.14.~12.17.	12.31.
합격발표		11.30.		12.14.		

□ 원서접수

- 접수기간: '21. 11. 2.(화) 14:00 ~ 11. 17.(수) 18:00까지
- 접수방법: 안전보건공단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 및 접수
※ 채용사이트 주소 ☞ <https://kosha.applyin.co.kr>
- 접수내용: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지원자격 증빙서류
- 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완료하여야 함)

증빙서류	제출대상	발급일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지원자 전원	공고일('21.11.2.) 이후 발급분만 인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원자 전원	
졸업증명서(국문)	지원자 전원	
주민등록초본(개명사항 포함)	개명자에 한함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채용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온라인)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접수방법은 불인정
-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21.11.17.(수) 18:00)까지 최종제출이 완료되어 접수(수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만 유효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 필요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가능하며, 채용분야별·권역별 중복지원시 '자격미달' 처리함
- 지원자격 충족 및 우대사항 해당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1.11.17.) 기준으로 판단함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특히 우대사항 등 가점부여의 경우 입사지원서 입력정보와 증빙서류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입사지원서 입력정보를 기준으로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판단하므로 정보입력 시 유의
- 취업지원대상자는 지원서 입력정보를 기준으로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우대사항을 인정할 예정이므로 보훈번호, 가점비율 등 정보입력에 유의하여야 하며, 보훈번호·가점비율 등 오기재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입사지원서의 성명, 출생월일이 신분증과 다를 경우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경력 또는 학위 증빙서류의 성명, 출생월일이 입사지원서의 입력정보 또는 신분증과 다를 경우 해당 경력 또는 학위가 불인정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블라인드 처리하여 스캔본 등록(추후 원본제출)
- 증빙서류는 지원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며,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증빙서류는 해당정보를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스캔본이어야 함. 낮은 해상도 또는 첨부파일 오류(파일손상)등의 사유로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최종 제출 후, 지원서 수정은 불가하니 충분한 확인·검토 후 최종제출

□ 서류전형

- 심사일정: '21. 11월 말
- 심사항목: 지원자격, 직무수행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등
- 심사방법: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심사
- 합격발표: '21. 11. 30.(화) 17:00 이후 예정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채용사이트에 게시

□ 인성검사

- 검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검사일정: '21. 11. 30.(화) 합격자 발표 이후 ~ 12. 3.(금) 18:00까지
- 검사내용: 공단 인재상 부합 여부, 가치관, 공직 윤리 등
- 검사방법: 별도로 지정된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별 실시

※ 기한 내 인성검사 미완료자는 면접응시 포기로 간주 및 면접참여 제한

□ 면접전형

- 심사일정: '21. 12. 7.(화)
- 심사장소: 면접응시자 대상 별도 안내
- 심사항목: 직무 지식·능력, 정신자세, 공단 인재상, 공직윤리, 발전 가능성 등

※ 토론, 상황면접, 경험기반 질의·응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 심사방법: 우대사항 증빙서류 제출·확인 후 면접심사(집단면접)

- 면접 당일 아래의 우대사항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 및 제출

※ 증빙서류 미지참시 면접전형 참여가 불가하니 면접응시자는 유의

<우대사항 증빙서류>

증빙서류 종류	제출대상	발급일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자	공고일('21.11.2) 이후 발급분만 인정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	장애인 해당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본인이 직계자녀일 경우, 외국인 출신 부모명의로 서류 제출)	다문화가족 해당자	기한없음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채용분야 직무설명서상 우대자격증 소지자 ※세부 우대자격증 항목은 직무설명서 참조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발표일정: '21. 12. 14.(화) 17:00 이후 예정
- 발표내용: 최종합격자 또는 예비합격자 여부
- 등록일정: '21. 12. 14.(화) 합격자 발표 이후 ~ 12. 17.(금) 18:00까지
-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채용사이트에 게시

√ 합격자 등록 유의사항

- 합격자 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취소
- 임용포기를 원할 경우, [덧붙임5]의 임용포기확인서를 작성·스캔하여 recruit@kosha.or.kr로 송부
- 임용포기확인서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으로 차순위자에게 발생할 피해예방을 위해 아래의 경우 확인서 없이 입사포기 처리 후 차순위자에게 입사 기회 부여
 - 입사일정 및 장소가 사전에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불참 후 별도의 임용포기확인서 또는 사유서 제출 없이 공지된 집합시간으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한 경우
 - 입사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임용포기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의사표시 시점으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한 경우
- 임용포기자 또는 조기면직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번대로 유선 연락하여 추가합격을 진행하며, 추가합격자는 임용예정일에 맞추어 근무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함

□ 임용

- 임용일정: '21. 12. 31.(금) 예정
- 임용서류: 최종합격자에 대해 별도 알림

√ 임용 유의사항

- 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임용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사본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명시한 임용서류 외 다른 서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서류 미제출 또는 임용서류 확인 결과 합격자 기존 등록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임용 후, 신원조사 결과 등에서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 취소

III 기타 안내사항

- 우리 공단은 전국 순환근무가 원칙입니다.
 - 전국 부서에 배치될 수 있으며, 순환근무에 따른 직무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마감 시간까지 최종 제출하지 못한 지원서는 무효처리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 연락처 오기재에 따른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정확한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우리 공단은 공정하고 편견 없는 공개경쟁 및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준수합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절차를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원조사 결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청탁, 압력 등)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한 경우
 - 제출서류 중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소정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 부정한 방법 등으로 채용절차의 중지나 합격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임용포기 등에 따른 예비합격자를 선발·운영합니다.
 - 예비합격자는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의 30% 또는 5명 이내에서 운영하며 30%와 5명 이내 중 더 많은 인원으로 예비합격자를 선정·운영합니다.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미달 하더라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 내용은 업무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또는 해당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불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채용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kosha.or.kr)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전형 불합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시험출제자, 심사위원 개인정보 요구 및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타인의 합격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정보 요구 등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증빙서류는 지원자격·가점 적용대상 여부 확인만을 위해 활용하며, 정해진 기간에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서류 확인결과 허위 기재 사실 확인 시 불합격처리합니다.
 -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지원자는 조화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스캔본으로 제출한 증빙서류는 추후 최종합격자에 대해 원본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본 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사이트를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 전 채용사이트의 공지사항, FAQ 및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인사관리부: 052-703-0561, 0564, 0565

IV [참조] 공단 근무기관별 소재지

- 공단 근무기관별 소재지는 아래와 같으니, 지원시 참조바랍니다.

권역구분	근무기관별 소재지
서울권역	서울광역본부(서울), 서울북부지사(서울), 강원지역본부(춘천), 강원동부지사(강릉), 서울남부지사(서울), 서울동부지사(서울)
부산권역	본부(울산), 연구원(울산), 교육원(울산), 인증원(울산), 부산광역본부(부산), 울산지역본부(울산), 경남지역본부(창원), 경남동부지사(양산)
광주권역	광주광역본부(광주), 전북지역본부(전주), 전북서부지사(군산), 전남지역본부(무안), 전남동부지사(여수), 제주지역본부(제주)
대구권역	대구광역본부(대구), 대구서부지사(대구), 경북지역본부(구미), 경북동부지사(포항)
인천권역	인천광역본부(인천), 경기지역본부(수원), 경기북부지사(의정부), 경기서부지사(안산), 경기동부지사(성남), 경기중부지사(부천), 고양지사(고양), 기술원(경기도)
대전세종권역	연구원(대전), 대전세종광역본부(대전), 충북지역본부(청주), 충남지역본부(천안), 충주지사(충주)

【참조1】 코로나19 관련 응시생 유의사항

-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다음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전형 응시가 불가합니다.
 - 전형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단,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시험 응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일정 조건하에 일시적 외출허가 등을 득한 경우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전형 응시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별도 문의 요망)
- ◇ 응시자는 면접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신분확인 시간 제외)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제재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전형에 응시하여 감염증 확산 등의 물의를 일으킬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민·형사상책임 등)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예방수칙 강화 등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상기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 시 전형단계별로 상세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참조2】 공단 임용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무설명서

구분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권역	근무조건		채용인원
				근무형태	근무지	
경력직	4급	건축시공	전국	전일제(주 40시간)	본부 및 산하기관(전국)	7명
공단사업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사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핵심직무	○ 건축구조물 시공현장 중대재해조사, 재해예방 기술지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등					
수행업무	○ 기술지원 계획수립, 사업장 위험요인 분석, 중대재해조사, 재해발생 원인분석, 컨설팅, 각종 자료개발 및 보급, 사업장 모니터링, 고용노동부 점검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 이행유무 확인 및 추가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지원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사업장의 자율안전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한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심사, 사후관리 등					
필요지식 및 기술	○ 건축구조물, 거푸집동바리 및 비계 설계, 시공에 대한 전공지식 및 검토능력 ○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조해석 및 프로그램 운용 능력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지식 및 해석·적용 능력 ○ 구조검토에 따른 개선대책 제시 능력 ○ 건설안전 관련 법령의 종류, 구성, 체계에 대한 지식 및 해석·적용 능력 ○ 설계도서 용어, 구성 내용에 대한 지식 설계도서, 시방서, 전공서적 이해능력 ○ 공정관리, 작업환경 요소, 특수공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지식 ○ 공정별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대한 지식 ○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및 방법 ○ 안전시설 자재 특성 및 시설비용에 대한 지식 ○ 재해유발 원인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지식 ○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지식 ○ 안전관리 체제와 운용에 대한 지식 ○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필요역량 및 태도	○ 직무수행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 객관적·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 조직 내·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한 의식 등					

지원 자격		o 아래 응시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만 지원가능	
학위	o 관련전공* 학사 학위 이상 * 관련전공: 건설, 건축, 시공, 안전 ☞ 학과명(전공명)에 상기 단어가 포함되는 학과(전공) 및 이에 준하는 학과(전공)		
자격	o 자격증 또는 면허증 무관		
경력	o 관련분야* 경력 4년 또는 1,460일 이상 * 관련분야: 건설, 건축, 시공, 안전 ☞ 경력(재직)증명서의 부서명 또는 담당업무에 상기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상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경력이 4년 또는 1,460일 이상인 경우에도 관련분야 경력 인정 ↳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및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학력 등」증명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하여야 함		
증빙서류	(학위) 졸업증명서(국문) (경력)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우대 자격증		o 아래 자격증 보유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5%(기술사), 3%(기사), 1%(산업기사) 가점 부여	
자격증	종류	기술사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설안전	
		기사 건축, 건설안전	
		산업기사 건축, 건설안전	
증빙서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직무설명서

구분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권역	근무조건		채용인원
				근무형태	근무지	
경력직	4급	토목시공	전국	전일제(주 40시간)	본부 및 산하기관(전국)	6명
공단사업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사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핵심직무	토목구조물(흙막이·터널 또는 교량 등) 시공현장 중대재해조사, 재해예방 기술지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등					
수행업무	- 기술지원 계획수립, 사업장 위험요인 분석, 중대재해조사, 재해발생 원인분석, 컨설팅, 각종 자료개발 및 보급, 사업장 모니터링, 고용노동부 점검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 이행유무 확인 및 추가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지원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사업장의 자율안전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한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심사, 사후관리 등					
필요지식 및 기술	- 흙막이·터널지보공, 교량, 거푸집동바리 및 비계 설계, 시공에 대한 전공지식 및 검토능력 -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조해석 및 프로그램 운용 능력 - 구조검토에 따른 개선대책 제시 능력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지식 및 해석·적용 능력 - 건설안전 관련 법령의 종류, 구성, 체계에 대한 지식 및 해석·적용 능력 - 설계도서 용어, 구성 내용에 대한 지식 및 설계도서, 시방서, 전공서적 이해능력 - 공정관리, 작업환경 요소, 특수공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지식 - 공정별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대한 지식 -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및 방법 - 안전시설 자재 특성 및 시설비용에 대한 지식 - 재해유발 원인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지식 - 안전관리 조직, 체제와 운용에 대한 지식 -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필요역량 및 태도	- 직무수행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 객관적·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 조직 내·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한 의식 등					

지원 자격	○ 아래 응시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만 지원가능	
	학위	○ 관련전공* 학사 학위 이상 * 관련전공: 건설, 토목, 시공, 안전, 사회기반, 인프라, 사회환경, 지질 ☞ 학과명(전공명)에 상기 단어가 포함되는 학과(전공) 및 이에 준하는 학과(전공)
	자격	○ 자격증 또는 면허증 무관
	경력	○ 관련분야* 경력 4년 또는 1,460일 이상 * 관련분야: 건설, 토목, 시공, 안전, 사회기반, 인프라, 사회환경, 지질 ☞ 경력(재직)증명서의 부서명 또는 담당업무에 상기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상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경력이 4년 또는 1,460일 이상인 경우에도 관련분야 경력 인정 ↳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및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학력 등」증명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하여야 함
	증빙서류	(학위) 졸업증명서(국문) (경력)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우대 자격 증	○ 아래 자격증 보유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5%(기술사), 3%(기사), 1%(산업기사) 가점 부여	
	자격증	종류
		기술사 토목시공,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건설안전
		기사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 토목, 건설안전
	증빙서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덧붙임1】 경력증명서(양식)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출생월일	월 일			
	연락처				
근 무 경 력	근무기간	근무일수	부서명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비고
	0000.00.00.~0000.00.00.	0년 0월 0일			
	0000.00.00.~0000.00.00.	0년 0월 0일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확인자 (인사담당자)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사무실)			
주 소		대표자	직 인		
※ 본 경력증명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응시자격 충족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증명서상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서명 또는 담당업무내용에 공단에서 요구하는 관련분야 단어 미포함 시 해당경력은 불인정됩니다.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확인자, 연락처, 대표자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회사직인이 없는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덧붙임2】 직무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 항목

직무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 항목

- ◆ 직무수행계획서는 아래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은 입사지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지원서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예: 성별, 연령, 사진, 신체조건, 학교명, 출신지역, 종교,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 경력직

1	본인의 경력(담당업무, 프로젝트 등) 중 응시한 채용분야에서 사망사고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력(최대 3개)과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0자 이내) ※ 평가착안사항: 직무수행능력 ※ 경력은 회사별 또는 담당업무별로 3개 이내에서 자유롭게 기술
2	건설업 사망사고감축을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한 가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건설분야 경력자로서 해당사업의 긍정적인 면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0자 이내) ※ 평가착안사항: 조직이해능력
3	본인이 응시한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자기개발 또는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내용과 그 성과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400자 이내) ※ 평가착안사항: 자기개발능력

【덧붙임3】 이의신청서(양식)

이의신청서

공고번호		이의전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이의신청 내용			
상기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채용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 채용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입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정보(채용분야 및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자필서명 등) 중 1개라도 누락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 내용은 사실과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불합격과 무관한 문의, 개인정보 요구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타인의 합격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정보요구 등은 처리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답변은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4】 반환청구서(양식)

반 환 청 구 서

공고번호		접수일자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 명		연 락 처	
반환주소	(우편번호 □□□□□)		
반환요구 서류	1. 2. 3.		
반환방법	☐ 등기우편(우편요금 착불), ☐ 등기우편(우편요금을 선 계좌이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공 지 사 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덧붙임5】 임용포기확인서

임용포기 확인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년도 신규
직원 채용 합격자로서 개인사정으로 임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덧붙임6】 임용동의 확인서

임용동의 확인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년도 신규
직원 채용 예비합격자로서 추가합격 임용에 다음과 같이 동의
합니다.

- 임용예정일(년 월 일)에 맞춰 정상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당 근무지에 도착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되고 다음 순위 예비합격자에게 입사기회가 부여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일 일 년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명: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